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가합110128, 2020가합110593(병합) 판결
[손해배상(기) ·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2048428, 2021나2048435(병합)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가합110128, 2020가합110593 판결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여정구, 이유경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김익현, 김태환, 노정호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20가합110128]

주위적으로, 피고와 C[서울 D아파트, E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57,740,000원 및 그 중 872,24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1.부터, 85,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57,740,000원 및 그 중 872,24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1.부터, 85,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20가합110593(병합)]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고, C은 원고의 어머니이자 피고의 할머니이다.

나. F아파트 매도 및 D아파트 매수

1) 원고는 2015. 8. 29. G에게 ‘서울 강남구 H 외 1필지 지상 F아파트 I호’(이하 ‘F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같은 날 계약금 1억 3,000만 원, 2015. 10. 1. 중도금 5억 원, 2015. 11. 3. 잔금 8억 7,000만 원, 합계 15억 원을 G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로 각 지급받았다.

2) 피고는 2015. 8. 31. K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호’(이하 ‘D아파트’라 한다)을 매매대금 8억 4,800만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으로 같은 날 계약금 8,500만 원, 2015. 10. 1. 중도금 3억 원, 2015. 11. 3. 잔금 4억 6,300만 원, 합계 8억 4,800만 원을 K에게 각 지급하였다.

한편 위 매매대금 8억 4,800만 원은 원고 계좌에 있던 예금이 K 계좌로 직접 송금되거나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K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2015. 8. 31. 원고가 피고에게 8억 4,800만 원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피고는 2015. 11. 3. D아파트에 관하여 2015.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명의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부

원고 계좌에 있던 예금 중 2016. 12. 21.부터 2018. 11. 28.까지 매월 350만 원 또는 200만 원씩 합계 85,500,000원이 피고 명의로 체결된 2016. 1. 21.자 L의 ‘M’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보험료로 납입되었다.

라. C와 피고의 증여계약 체결

C은 2017. 12.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C의 청구인낙

원고는 이 사건 2020가합110128호로 C 및 피고가 공모하여 원고 계좌에서 872,24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피고 명의로 매수한 D아파트의 매매대금 및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고, 이와 별도로 85,50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 및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C이 원고의 위 청구를 인낙하여 2021. 6. 24. 인낙조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0, 12,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원고 계좌에서 872,24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피고 명의로 매수한 D아파트의 매매대금 및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85,50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로 납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합계 957,74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피고와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C에게 자신의 돈을 인출하여 피고 명의로 D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는 적어도 위 합계 957,74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자신의 재산 관리 · 처분에 관하여 모친인 C에게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D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는 것에도 동의하였으며 그 매매대금 상당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명의만 피고 앞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C이 피고 명의로 가입한 보험계약으로서 C이 원고의 동의를 받고 원고 계좌에서 매월 그 보험료를 인출하여 납입한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매매대금 관련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872,24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는 전제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872,24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 계좌에 있던 예금 중 848,000,000원이 D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계좌에 있던 예금 중 24,240,000원 상당이 위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법무사비용, 취득세 등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공인중개사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으나, 한편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성동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가 2010년 3월경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투병하면서 원고의 모친인 C에게 재산관리를 맡겼는바, C이 원고의 신분증, 통장과 거래인감 등을 모두 맡아서 원고의 모든 재산을 전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스스로 진술한 점, ②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F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한 부분과 그 매각대금으로 D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C이 원고의 모든 재산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위 매매 관련 업무 역시 C에게 위임하였다는 것 또한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원고는 D아파트의 명의를 피고 명의로 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다), ③ 원고 계좌에서 지급된 D아파트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증여세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위 증여계약서는 C이 원고의 인감 및 통장과 매매계약서 등을 가지고 피고와 함께 세무사를 방문하여 조언을 받아 작성한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C과 피고가 위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하면 명확히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다고 반박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C과 피고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등의 고소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는 점, ④ 2015년에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는 피고 및 C과 함께 D아파트에서 수년간 거주해왔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5년 이상 그 소유관계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C이 아들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손녀인 피고 B를 위하여 8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C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계좌에 있던 예금 872,240,000원을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인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보험료 관련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85,50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로 납입하였다는 전제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위 85,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 계좌에 있던 예금 중 85,500,000원이 인출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가 2010년 3월경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투병하면서 원고의 모친인 C에게 재산관리를 맡겼는바, C이 원고의 신분증, 통장과 거래인감 등을 모두 맡아서 원고의 모든 재산을 전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스스로 진술한 점, ② C은 원고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직접 2016. 12. 21.부터 2018. 11. 28.까지 매월 350만 원 또는 200만 원씩 합계 85,500,000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계좌에서 약 3년에 걸쳐 매월 위 보험료 상당이 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C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 계좌에 있던 예금 85,50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C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피고에게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D아파트의 매매대금 지급 및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지급에 동의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C과 수익자인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피고와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C이 청구인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낙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민사소송법 제220조), 위 청구인낙의 효력은 당사자인 원고와 C 사이에 미칠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청구인낙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제2.의 나. 1) 및 2)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원고의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창호, 판사 전희숙, 판사 조정용

(별지)

부동산의 목록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 60.8㎡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상 목조합석지붕 2층 점포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 27.4㎡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상 목조합석지붕 2층 점포
- 중 각 피고 지분 전부(8분의 5). 끝.

